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제1113호 2019. 5. 16.(목)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19-473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1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7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14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15호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2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공고 제2019-473호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 인정소하천정비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6일

옥 천 군



| 소하천<br>명 | 사 업 개 요                 |  |                                      |        |     |    |             |             |  | 비고 |
|----------|-------------------------|--|--------------------------------------|--------|-----|----|-------------|-------------|--|----|
|          | 공사명                     | 공사위치                                   |                                      | 사업량(m) |     |    | 공사기간        |             | 공사목적   |    |
|          |                         | 시작하는<br>지점                             | 끝나는<br>지점                            | 축제     | 호안  | 기타 | 착공          | 준공          |  |    |
| 인정천      | 청산<br>인정소하<br>천정비공<br>사 | 옥천군<br>청산면<br>인정리<br>852-1<br>번지<br>일원 | 옥천군<br>청산면<br>인정리<br>565<br>번지<br>일원 | 480    | 480 | 1식 | '19.05<br>. | '20.12<br>. | 미 개수된 소<br>하천을 정비<br>하여 사전 재<br>해예방 및 자<br>연 친 화 적 인<br>쾌적한 하천<br>주변환경개선<br>도모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

# 청산 인정소하천정비공사 세부 시행계획

##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청산 인정소하천정비공사

##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홍수피해)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쾌적한 하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량 : 소하천정비 L=480m,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비 : 994백만원

##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 점                    | 종 점                  | 사업량          | 비 고 |
|------------------------|----------------------|--------------|-----|
|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852-1번지 일원 |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565번지 일원 | 소하천정비 L=480m |     |

##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9. 05. ~ 2020. 12.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 9. 실시설계도서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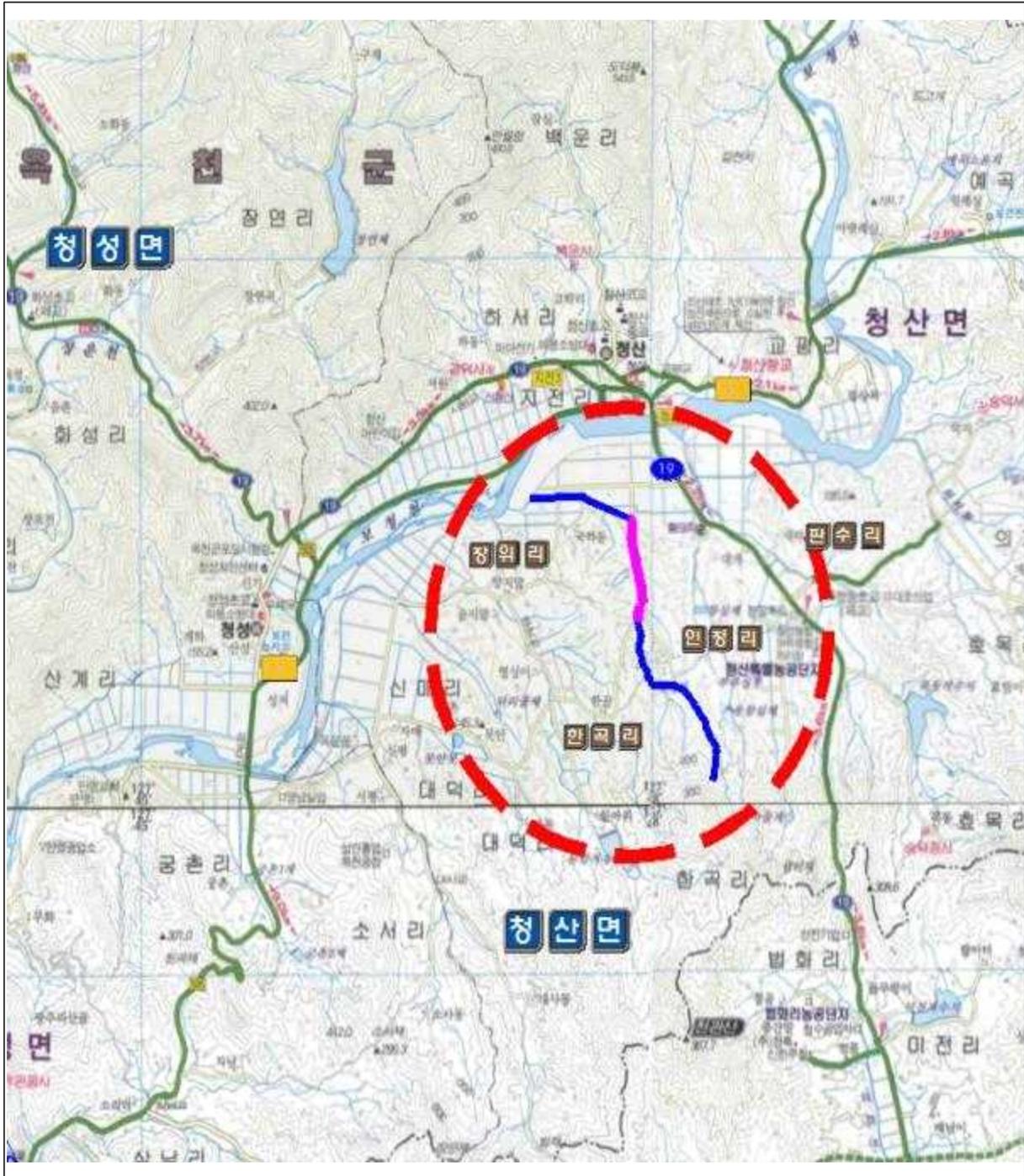
| 공기<br>공종 | 보할<br>(%) | 착 수 일 로 부 터 |      |      |      |      |       | 비고 |
|----------|-----------|-------------|------|------|------|------|-------|----|
|          |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개월  |    |
| 토공       | 13.5      | 2.7         | 2.7  | 2.7  | 2.7  | 2.7  |       |    |
|          |           | 2.7         | 5.4  | 8.1  | 10.8 | 13.5 |       |    |
| 배수공      | 0.7       |             | 0.2  | 0.3  | 0.2  |      |       |    |
|          |           |             | 0.2  | 0.5  | 0.7  |      |       |    |
| 암거공      | 26.0      |             | 6.5  | 6.5  | 6.5  | 6.5  |       |    |
|          |           |             | 6.5  | 13.0 | 19.5 | 26.0 |       |    |
| 호안공      | 29.4      | 4.9         | 4.9  | 4.9  | 4.9  | 4.9  | 4.9   |    |
|          |           | 4.9         | 9.8  | 14.7 | 19.6 | 24.5 | 29.4  |    |
| 포장공      | 9.6       |             | 2.4  | 2.4  | 2.4  | 2.4  |       |    |
|          |           |             | 2.4  | 4.8  | 7.2  | 9.6  |       |    |
| 부대공      | 20.8      | 3.4         | 3.4  | 3.5  | 3.5  | 3.5  | 3.5   |    |
|          |           | 3.4         | 6.8  | 10.3 | 13.8 | 17.3 | 20.8  |    |
| 소계       | 100.0     | 11.0        | 20.1 | 20.3 | 20.2 | 20.0 | 8.4   |    |
| 누 계      |           | 11.0        | 31.1 | 51.4 | 71.6 | 91.6 | 100.0 |    |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단 위 : 백만원)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비고 |
|-----|-------|-------|-------|----------|----|
| 994 |       |       | 994   |          |    |

## 12.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 13.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사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9년 6월 중순
- 보상절차 및 방법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  
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다. 기타사항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지적공사)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730-3523)

붙임 편입(예정)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 붙임 : 편입(예정)토지 및 지장물 조서

### □ 편입(예정)토지 조서

| 구분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적면적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비고 |
|----|-----|----|--------|----|--------|-------|----------------------|-----------------------|-------|----|----|
|    | 읍면  | 리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총계 | 9필지 |    |        |    | 19,213 | 2,417 |                      |                       |       |    |    |
| 1  | 청산  | 인정 | 산31    | 임  | 5,157  | 338   | 진송씨빙<br>회공파지상<br>공중중 | 충북 보은군<br>삼승면<br>천남리  |       |    |    |
| 2  | 청산  | 인정 | 852-10 | 답  | 230    | 230   | 박*흥                  | 충북 옥천군<br>청산면<br>하서2길 |       |    |    |
| 3  | 청산  | 인정 | 852-6  | 답  | 454    | 454   | 홍*희                  | 대전시 중구<br>대흥동         |       |    |    |
| 4  | 청산  | 인정 | 851-1  | 답  | 2,488  | 85    | 홍*표                  | 충북 옥천군<br>옥천읍<br>마암리  |       |    |    |
| 5  | 청산  | 인정 | 852-3  | 답  | 156    | 156   | 박*흥                  | 충북 옥천군<br>청산면<br>하서리  |       |    |    |
| 6  | 청산  | 인정 | 534    | 답  | 2,704  | 480   | 김*화                  | 충북 옥천군<br>청산면<br>백운길  |       |    |    |
| 7  | 청산  | 인정 | 535    | 답  | 3,750  | 125   | 김*화                  | 충북 옥천군<br>청산면<br>백운길  |       |    |    |
| 8  | 청산  | 인정 | 536    | 답  | 1,523  | 295   | 박*범                  | 충북 옥천군<br>청산면<br>인정리  |       |    |    |
| 9  | 청산  | 인정 | 568    | 답  | 2,751  | 254   | 박*현                  | 충북 옥천군<br>청산면<br>인정리  |       |    |    |

### □ 지장물 조서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 물건의<br>종류 | 구조 및<br>규격 | 수량  | 단위 | 토지소유자 |                   | 비고 |
|----------|-----|----|-------|-----------|------------|-----|----|-------|-------------------|----|
|          | 읍,면 | 리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
| 계        |     |    |       |           | 4건         |     |    |       |                   |    |
| 1        | 청산  | 인정 | 852-6 | 포도밭       |            | 425 | ㎡  | 홍*희   | 대전시 중구<br>대흥동     |    |
| 2        | 청산  | 인정 | 852-3 | 포도밭       |            | 156 | ㎡  | 박*흥   | 충북 옥천군<br>청산면 하서리 |    |
| 3        | 청산  | 인정 | 852-3 | 관정        |            | 1   | 식  | 박*흥   | 충북 옥천군<br>청산면 하서리 |    |
| 4        | 청산  | 인정 | 536   | 사과밭       |            | 316 | ㎡  | 박*범   | 충북 옥천군<br>청산면 인정리 |    |
| 5        | 청산  | 인정 | 1013  | 사과밭       |            | 350 | ㎡  |       | 국                 |    |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목,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대기오염 상황 정보제공, 대기환경 개선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제안(안 제11조 및 제12조)

##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 의견통지내용

-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7. 붙임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조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 및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 지원, 보건용 마스크 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제안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등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옥천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안 제4조)
  -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5조)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6조)
  -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안 제7조)
  -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8조)

##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 의견통지내용

-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7. 붙임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8.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

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손석철 의원

3.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모임장소이자 쉼터로 활용되는 마을회관 신축 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시 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안 제6조)

| 현 행   | 개 정 안                     |
|---|---------------------------|
| 건축 연면적 85㎡ 미만 : 7천만원 이내<br>건축 연면적 85㎡ 이상 : 8천만원 이내<br>건축 연면적 133㎡ 이상 : 10천만원 이내 | 면적과 상관없이<br>개소당 1억3천만원 이내 |

##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 의견통지내용

-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7. 붙임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축·재건축 : 개소당 1억3천만원 이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br/>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br/>호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br/>급할 수 있다.</p> <p>1. <u>신축 · 재건축</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건축 연면적 85m<sup>2</sup> 미만 :</u><br/>      <u>7천만원 이내</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건축 연면적 85m<sup>2</sup> 이상 13</u><br/>      <u>3m<sup>2</sup> 미만 : 8천만원 이내</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건축 연면적 133m<sup>2</sup> 이상 :</u><br/>      <u>10천만원 이내</u></p> <p>2. · 3. (생   략)</p> | <p>제6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br/>음)</p> <p>② -----<br/>-----<br/>-----<br/>-----.</p> <p>1. <u>신축 · 재건축 : 개소당 1억3</u><br/>      <u>천만원 이내</u></p> <p>2. · 3. (현행과 같음)</p> |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